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제 목 :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와  
관련 한 권고

## 주 문

우리 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감이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당사자와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만약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두 사람에 대한 인사를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2.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소속 등 조직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3.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인권과 관련한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정당한 협력자로서 대우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권고 배경

교육감은 인권옹호관 000과 조사구제팀장 000의 계약기간이 2016. 8. 1. 자로 만료되는 데 즈음하여 지난 6월 말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당사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여러 차례 교육감 면담과 계약 연장 불가사유의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2. 이유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계약연장 거부와 관련한 일련의 흐름은 그것이 단지 두 사람의 계약연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학생인권센터의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조직운영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의 근본적인 부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두 사람의 인사문제를 중요한 학생인권 관련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가.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계약연장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의 실무책임자인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학생인권조례 제43조 제2항). 인권옹호관의 임명에 관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의 적격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은 그 직무수행에서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며 이는 임명과 직무수행에서뿐 아니라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직무수행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무수행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이는 직무수행과정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옹호관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센터 소속 직원의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생인권센터 소속 직원의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에 관해 적어도 당사자와 우리 위원회에 그 합리적 근거 또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계약연장 거부통보와 관련하여 당사자나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교육국장이 학생인권심의위원장에게 사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는 하나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합리적 사유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사결정과정이 낱낱이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그것을 공개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계약연장 거부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교육감 주변 인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 인적 구성을 바꾸려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그 동안

학생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센터는 그 지위가 매우 독특하여 인성건강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지휘계통에 있지 않고, 인성건강과장을 비롯하여 교육청의 모든 부서나 직원과 모든 교원에 대해 학생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하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인권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학생인권센터 관련 인사가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센터와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즉, 학생인권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의 소명, 그리고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다양한 경로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 소통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계약연장 거부권이 학생인권센터나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의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구의 책임자에 대한 재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연장거부는 자의적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더 논의할 게 없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당 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것은 학생인권센터 소속 직원 인사 자체의 당부보다는 그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기구로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인권옹호관의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같은 조례 제43조 제2항). 설사 노동관계법상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임용계약에서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 위원회의 이러한 요구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나 여러 조항의 해석에 근거한 정당한 것입니다.

흔히 인사권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사과정에 내부와 외부의 여러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을 거치며 여러 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고유한 인사권이라는 게 인사를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고유하다는 것은 선택과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해서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어서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에 관해 설명하고 앞으로 학생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아예 면담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뜻심 있는 일처리다, 어느 누구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나 그것은 대화와 소통의 거부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일처리의 방식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권력화 또는 관료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합니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평가나 이에 기초한 조직이나 운영방향 개편 시도 등은 학생인권센터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와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 학생인권센터의 파행적 운영이 우려됩니다.

학생인권센터는 인권옹호관을 그 장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그런데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데도

조사구제팀장에 대해서만 먼저 임용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 것은 학생인권센터의 운영을 파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인권옹호관을 공식으로 한 채 일정 기간 장의 대행 방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책임자가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아울러 학생인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안의 작성 등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으로서 학생인권센터의 운영이 팀장에 의해 대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인권옹호관을 제외하고 조사구제팀장에 대해서만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더욱 우려되는 일입니다.

## 결 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7. 1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서명)
위원	김 석	(서명)
위원	박재홍	(서명)
위원	송기춘	(서명)
위원	오동선	(서명)
위원	이규연	(서명)
위원	이금로	(서명)
위원	이영진	(서명)
위원	임선희	(서명)
위원	임성희	(서명)
위원	전수련	(서명)
위원	홍성란	(서명)